

규제개혁기획단,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공청회 개최

정부 건설개혁안, 업계 강력 반발

기계설비공사 등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PQ신인도 심사시 건설재해율 반영에 대한 의견>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 의견

가.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배경

현행의 건설산업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가 난립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 발전 저해요인의 가장 큰 원인은 일반·전문 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과 수직적 원·하도급 체계이다.

나. 정부의 개편방안

- ①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2008년)
- ② 수직적 원·하도급 구조를 수평적 상호협력체제로 전환

다. 정부 개편방안의 문제점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건설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고 규제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고속도로에 2륜 자동차의 통행금지와 화물차의 1차선 주행금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교통규범인 것과 같이 건설산업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 시공관리를 하는 일반 건설업으로 양분하여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건설업계의 기본적인 질서가 바로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이다.

그러나 정부에는 불법하도급과 저가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는 의무하도급제도와 부대입찰제도는 폐지하면서 건설산업을 발전시킨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제도를 규제라고 지목하여 폐지하려는 것은 정부가 일반건설업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건설산업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공청회 발표 자료에서 일반과 전문건설업으로 통합하여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를 명시하였으나, 수직적 원·하도급 구조를 수평적 상호협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전문건설업이 건설업으로 통합되어도 일반건설업이 시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존되고, 발주자가 관행적으로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을 할 경우 수직적 원·하도급 체계는 그대로 존치된다.

오히려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 폐지로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취득하여 원도급시장 및 하도급시장도 일반건설업자가 석권하게 되며, 현재의 전문건설업자는 30년

전의 시공참여자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 건의사항

수평적 상호협력체계란,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시장에서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하게 원도급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수평·상호협력적으로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

- 1)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 의무적 도입
- 2) 모든 건설업자(일반, 전문)의 원도급 시장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 → 복합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일반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끼리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보장
- 3) 기계설비공사 등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
- 4) 시공참여자 제도는 하도급공사에만 허용하고 원도급 공사는 불허
- 5) 일반건설업자가 수주한 복합공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확대 반대

■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설비건설협회 의견

가. 저가하도급심사기준 도입배경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시,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82%미만으로 하도급시에는, 발주자가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한 규정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자가 공사를 직접시공하는 부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원도급자가 공사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 법정경비,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있다.

동 규정에는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전체공사비의 7%내외)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관리비는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원도급업체가 현장관리에 필요한 공사원가를 전체공사비의 18%로 계상하였다.

또한 원도급자 수수금액의 82%미만시 저가하도급을 심사하되, 공종의 종류에 따라 최대 원도급자 수수금액의 75%의 금액까지 하도급을 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도급자는 낙찰률에 상관없이 충분한 공사관리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

나. 저가하도급심사기준의 문제점

최저가낙찰제도에서는 원도급자 낙찰률이 60%이하의 저가에서도 원도급자에게는 충분한 이윤이 포함된 18%의 관리비용을 인정하는 모순점이 발생된다.

50억원 이상공사는 내역입찰제도이므로 원도급자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 하도급부분의 단가를 예정금액단가보다 낮게 제출하여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회피하고 있어,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실효성 미흡하다.

다. 건의사항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중 “하도급부분금액”을 원도급자 수수금액에서 “(예정가격× 원도급낙찰률)”로 개정하여야 한다.

※저가하도급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원도급자의 계산방법 조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저가하도급심사기준을 차등 적용)

- ① 원도급자의 낙찰률에 따라, 저가하도급심사기준 차등화 건의
- ②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60%미만: 저가하도급심사기준 (92%)
- ③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70%미만: 저가하도급심사기준 (88%)
- ④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80%미만: 저가하도급심사기준 (85%)
- ⑤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85%미만: 저가하도급심사기준 (82%)
- ⑥ 원도급자의 낙찰률이 85%이상: 저가하도급심사기준 (80%)



■ PQ신인도 심사시 건설재해를 반영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 의견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산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PQ심사시 신인도 평가부분에, 건설재해율을 반영하여 입찰시 가·감점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산재발생시 하도급업체에게 산재은폐를 강요하여, 하도급을 주로 하는 설비업체는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에 의하여 재해처리를 하지 못하고, 업체 자비로 산재를 처리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된다.

나. 공청회 자료의 문제점

공청회 발표자료에는 산재발생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은폐 건수에 따라 감점처리하고, 가점제도는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는 PQ제도에서 가점을 받기 위하여 여전히 하도급업체에게 산재은폐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건의사항

PQ 신인도 심사시 건설재해율 가점제도 존치시 현행과 같은 산재 은폐가 발생되므로 가점제도를 완전 폐지하여야 한다.